보도시점 배포 시 배포 2025. 9. 15.(월)

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대주주 범위, 현행 기준 유지

- 현행 '종목당 보유금액 50억원 이상' 기준 계속 적용

기획재정부는 지난 7월 세제개편안을 발표한 이후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대주주 범위 조정 여부에 대해 **시장의 의견을 종합 청취하고 국회와 긴밀히 논의**해 온 결과, **자본시장 활성화에 대한 국민적 열망 등을 고려**하여 **대주주 범위를 현행과 같이 '종목당 보유금액 50억원 이상'으로 유지**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.

정부는 이번 조치 외에도 150조원 규모의 **국민성장 펀드를 조성**하고, **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(BDC) 도입을 지원**하는 등 **자본시장 발전**과 **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정책들을 지속 추진**하고, **시장과의 적극적인 소통 노력**도 이어 나갈 예정입니다.

담당 부서	세제실 금융세제과	책임자	과 장	윤수현 (044-215-4230)
		담당자	사무관	남원우 (namwonwoo@korea.kr)

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